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67
----------	------

2013년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4월 5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3년 4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7월 5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 가. 제안이유

-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목적 및 사업범위를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상임이사(상근이사) 1명을 신설하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담조직의 책임자로 임명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운영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재단의 설립목적에 디자인산업 진흥 외에 디자인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디자인문화 확산을 추가함(안 제1조).
-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 범위에 시민서비스디자인 사업, 디자인정책 연구사업,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확대함(안 제4조).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관장할 재단 상임이사(1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함(안 제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목적 및 사업범위를 변경하고, 임원으로 상임이사 1명을 추가하기 위한 것임.
- 그 내용은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을 가진 서울디자인재단의 설립과 운영 목적을 “디자인 진흥”으로 변경하는 한편, 개관을 준비 중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총괄·운영할 상임이사 1명의 증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을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서 “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의 “디자인산업” 중심의 육성에서 그 영역을 확대하여 디자인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디자인 사업 전반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에 재단의 사업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디자인 산업”이란 용어를 “디자인”으로 모두 바꾸고, “시민서비스디자인 사업”, “디자인정책 연구사업”,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의 새로운 사업 분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살펴보면,
  - 안 제1호의 경우에는 현행 조례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역사박물관의 한양도성 전시관이 당초 동대문역사공원 내 이벤트홀이었으나 전시공간으로서의 대표성·상징성이 낮음에 따라 서울디자인지원센터로 전시관 건립장소를 변경하였기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관리주체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수정되어야 함에 따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운영”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호의 “시민서비스디자인 산업”의 경우, 지역경제, 사회문제, 생활환경 등 시민의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디자인산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되었으며 2013년도 디자인재단 예산에는 “성수동 구두제화산업 활성화”, “서울약령시, 재래시장 활성화”, “범죄예방 시민안전디자인 연구” 등의 사업으로 14억2천7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하지만 “시민디자인서비스 사업”이란 용어는 “시민을 위한 디자인 사업”이라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디자인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담고 있는 용어이며 현 시장의 주요 시정철학을 담고 있는 용어로서, 별도로 사업항목으로 추가되지 않더라도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 활동과 그 보급”,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그 밖의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속하

므로 이번 조례개정에 별도로 추가로 명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안 제4호의 “디자인정책 연구사업”의 경우 안 제7호의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과 유사한 활동이므로 이 두 조문을 합쳐서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즉 정책연구를 위해서는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가 그 기초작업이 되므로 이 두 호를 합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안 제5호의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의 경우, 이번에 DDP운영에 새로 추가되는 사업이므로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됨. 하지만 패션과 봉제산업 분야의 지원사업 외에도 “동대문수출지원센터”운영에 패션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구성이 추진되고, “동대문패션지원센터” 운영에 봉제업과 관련된 마케팅, 실습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의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안 제10호의 “그 밖의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그 밖의 디자인 및 패션·봉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여 패션·봉제산업에 대해서도 단순한 지원 이상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6조에서 서울디자인재단 상임이사 1명을 추가하여 명문화하려는 것은 개관을 앞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전담조직의 총괄책임 운영자를 영입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 충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운영 책임자를 단장이나 본부장으로 영입하지 않고 재

단의 상임이사인 대표이사와 혼동되거나 조직의 일체감이 분산 될 수 있는 2명의 상임이사 체제로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즉 현재 서울디자인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는 비상임이고, 대표이사만을 상임이사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DDP 개관준비의 업무규모가 크고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여 전례에도 없는 “상임이사”라는 직책을 신설함은 매우 비상식적인 직제구성으로 사료됨.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2014년 연내에 DDP를 독립법인의 출범하기 위한 과도적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서울디자인재단의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 제1호가 DDP운영인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디자인재단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별도로 새로운 독립법인을 출범하겠다는 계획 그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움.
- 또한 서울시에서는 산하 재단 및 공사·공단 중 복수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유사 사례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경영전략·사업전략본부장 2명이 상임이사이며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사업운영·도로교통·시설관리본부장 3명이 상임이사로 있음(참고자료 2). 하지만 시 출연 재단에 속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이사장 아래에 2명의 상근이사를 두고 있으나, 이사장이 사실상 상근으로 대표이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디자인재단과는 구분이 되고 있음.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2명의 상임이사의 업무를 “경영”과 “보증관리”라는 뚜렷이 성격이 다른 전문적인 업무로 분리할 수 있으나 디자인재단과 DDP운영은 그 업무성격이 매우 유사하므로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처럼 구태여 분리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도 상임이사로 근무하는 본부장의 영역이 “경영”, “도로 및 교통”, “시설관리”의 이질적인 분야로 나뉘어 있음.

- 현재 디자인재단에서는 DDP개관준비를 위하여 총감독을 선임 (임기: 2013.2.5.~8.4. 6개월)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4월 5일 직제개편을 통해 대표이사 이하 조직을 크게 디자인경영단과 DDP경영단의 2단체계로 바꾸고 디자인경영단 단장은 재단에 파견된 2급 내지 3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으로 바꾼 바, 디자인경영단 단장을 공무원으로 보하려는 계획은 전문화된 민간기구인 재단이 서울시의 디자인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본래 디자인재단의 설립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즉 민간기구인 재단의 주요 경영자를 공무원으로 파견하려는 계획은 재단의 전문화 및 자율성에 크게 위배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서울시는 자체 고위공무원 인력의 수급 조절에 필요한 방편으로 재단을 활용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할 것임.
- DDP경영단의 경우, 개관이 2014년 3월 3일에 예정됨에 따라 DDP단장을 상임이사로 보하고 단의 정원을 14명에서 41명으로 증원한 바, 서울시에서는 DDP라는 상시조직에 총감독 형태로 단기간의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단장을 상임이사로 채용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디자인재단의 상근직인 대표이사가 사실상 DDP경영단 업무도 총괄하므로 “상임이사”의 형태로 보해야 하는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음. 장기근무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 계약직으로 경영본부장과 공연본부장을 채용하듯이, 대표이사 아래에 계약직으로 단장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 동 조례안의 관련법령을 집행부에서는 「민법」 제32조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7조가 맞는 것이며, 타 재단인 세종문화회관이 상임이사를 사장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신용보증기금법」을 살펴보면, 이사장이 현재 재단의 대표이사과 역할과 같으며 상임이사 임명 권한을 갖는데 비하여, 디자인재단의 경우 상임이사 임명권을 대표이사가 아니라 시장이 갖고 있어서 서로 구분이 됨. 조례에 새로 신설되는 상임이사가 DDP운영을 맡는다는 내용도 없어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정관도 조례에 따라 모두 바뀌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준비가 없었음.

**답변 :**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살펴보고 보고 드리겠으나, 현재 DDP의 방대한 조직의 운영과 원활한 개관준비를 위하여 상임이사는 반드시 필요함. 정관개정안도 다음에 함께 준비하겠음.

**질의 :** 디자인재단이 DDP의 운영을 그 첫째 목적으로 설립된 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다른 업무로 인하여 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상임이사를 새로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인정할 수 없음. 상임이사를 임명하려면 현재 디자인재단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부터 폐지가 되어야 함.

**답변 :** 현실적으로 앞으로 수 백 명이 근무하게 되는 DDP 조직의 책임자가 상임이사 형태로 필요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안 제4조제1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운영”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으로 하고,
- 안 제4조제3호 “시민서비스디자인 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4호과 제7호를 합쳐서 안 제3호로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으로 하며,
- 안 제4조제5호, 6호, 8호, 9호를 각각 안 제4조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로 하며, 동조 안 제10호 “그 밖의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안 제8호로 하여 “그 밖의 디자인 및 패션·봉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 안 제6조는 현행 조례 제6조와 같이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67
----------	---------

제안연월일 : 2013년 7월 5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수정이유

안 제4조의 재단의 사업 범위와 내용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여 다시 정리하고, 안 제6조 중 상임이사 신설부분은 현행 조례 제6조와 같이 수정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안 제4조제1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운영”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으로 수정함.
- 안 제4조제3호 “시민서비스디자인 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4호와 제7호를 합쳐서 안 제3호로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으로 수정함.
- 안 제4조제5호, 6호, 8호, 9호를 각각 안 제4조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로 하며, 동조 안 제10호 “그 밖의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안 제8호로 하여 “그 밖의 디자인 및 패션·봉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수정함.

○ 안 제6조는 현행 조례 제6조와 같이 수정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제3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원안동의)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미첨부사유서 별첨)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협의완료(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 2. 21 ~ 3. 13)결과 :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안 제4조제3호에서 10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4.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5.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6.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7.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의 디자인 및 패션·봉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각각 시장이 임명한다.
- ③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p>제3조(목적) 이 조는 <u>서울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u>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운영</li> <li>2. (생략)</li> </ol>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u>디자인산업 진흥 및 작품 전시 활동과 그 보급</u></li> <li>4. <u>디자인산업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u></li> <li>5. <u>디자인산업의 국내외 교류사업</u></li> <li>6. <u>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하여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에 위탁하는 사업</u></li> <li>7. <u>그 밖의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li> </ol> <p>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u>대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u>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p> <p>② 이사장과 <u>대표이사</u>는 각각 사장이 임명한다</p> <p>③ (생략)</p> <p>④ <u>대표이사</u>를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p>	<p>제3조(목적) — <u>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u></p> <p>제4조(재단의 사업)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u>시민서비스디자인사업</u></li> <li>4. <u>디자인정책 연구사업</u></li> <li>5. <u>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u></li> <li>6. <u>디자인</u></li> <li>7. <u>디자인</u></li> <li>8. <u>디자인</u></li> <li>9. <u>디자인</u></li> <li>10. — <u>디자인</u></li> </ol> <p>제6조(임원) ① —</p> <p><u>대표이사, 상임이사 1명</u>을 — <u>이하</u></p> <p>② — <u>대표이사 및 상임이사</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대표이사 및 상임이사</u></p>	<p>제3조(목적) (개정안과 같음)</p> <p>제4조(재단의 사업)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u>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u></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u>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u></li> <li>4. (개정안 제5호와 같음)</li> <li>5. (개정안 제6호와 같음)</li> <li>6. (개정안 제8호와 같음)</li> <li>7. (개정안 제9호와 같음)</li> <li>8. <u>그 밖의 디자인 및 패션·봉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li> </ol> <p>제6조(임원)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서울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을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으로 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2.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
3.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4.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5.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6.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7.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의 디자인 및 패션·봉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u>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u>향상시키고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u> _____</p> <p>_____.</p>
<p>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u>운영</u></li> <li>2. (생략)</li> </ol>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4조(재단의 사업)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u>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u></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u>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u></li> <li>4. <u>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u></li> </ol>
<p>3. <u>디자인산업</u>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p> <p>4. <u>디자인산업</u>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p>	<p>5. <u>디자인</u>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p>
<p>5. <u>디자인산업</u>의 국·내외 교류사업</p> <p>6. <u>디자인산업</u>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p> <p>7. 그 밖의 <u>디자인산업</u>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6. <u>디자인</u>의 국·내외 교류사업</p> <p>7. <u>디자인</u>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p> <p>8. 그 밖의 <u>디자인 및 패션·봉제산업</u>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